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규정

제 정 : 2006. 11. 23

1차개정 : 2008. 3. 25.

2차개정 : 2012. 3. 26.

3차개정 : 2013. 12. 20.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종목의 인수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원칙) 인수업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주무부처 고시 등 관계법령(업무방법서를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적용대상종목) 제1조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종목은 다음 각호의 보험종목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유자등)
2.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3.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수익권등)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지급보증거래“라 함은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보증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정부(중앙은행 포함)
  2. 금융기관
  3.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해 대외지급 보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
- ② 이 규정에서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본지점을 말한다.
  1. 순자산이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액 이상으로서 주사무소를 국별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인 국가에 두고 있는 금융기관
  2. 국별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인 국가에 주사무소를 두고 “The Banker“지가 정한 500대 은행 또는 “The Banker“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규모가 “The Banker“지 500대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
- ③ 이 규정에서 “해외자원“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자원으로 석유·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알루미늄광·니켈광·몰리브덴광·희토류광·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제 5 조(기술위원회 설치)

- ① 투자위험보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둔다.
  - 1. 탐사사업 인수시 광구의 성공가능성 등의 기술적 위험 등과 관련된 사항
  - 2. 탐사사업 보상시 손실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
  - 3. 기타 투자위험보증사업 업무수행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 6 조(적용대상거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적용대상거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거래를 말한다.

- 1.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경우
-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가. 차주앞 대출채권 취득
  - 나. 차주의 사채 취득
- 3. 해외현지법인 및 외국인과의 합작회사에 대한 출자
- 4.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 취득
- 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피보험투자 상대방에 대한 출자 및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하거나 수익권·사채·대출채권 취득방식으로 투자한 후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 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거래계약상대방의 수익권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 8. 그 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 7 조(보험계약의 체결)

-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또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보험증권을 발급한다.
- ② 청약시 청구서류, 심사사항, 보험약정서류, 보험증권 기재사항, 보험료, 보험계약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 조(특약의 활용)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다양한 투자형태 및 계약구조를 감안하여 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특약 체결시에는 해당 인수담당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계약서 등의 승낙조건, 보험료 정산방법, 세부 행정절차 등 약관 내용을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개별특약은 인수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원화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 ① 외화로 보험금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규정, 인수요령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공사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제 10 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보험가액, 인수가액, 보험금액 및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험가액, 인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가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가. 보험가액, 인수가액 및 보험금액 : 1,000원 미만 단수절사  
나. 보험료(환급보험료 및 위약금을 포함함) : 1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환급보험료를 포함함)가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통화의 소숫점이하를 절사한다.

제 11 조(보험료 및 이익금 연체시 위약금 수납) 보험료 연체시 연 17%의 이율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연체금액 및 연체일수에 적용하여 받는다.

제 12 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 ①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요강” 은 폐지한다.

#### 부 칙 (2)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3)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